



# 축산물 위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

- 농림부 -

## ◎농림부고시제1998-4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8월 10일

농림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위해요소”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 병원성미생물·화학물질·농약·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약품·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식육이나 우유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기생충·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털·먼지·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3. “중요관리점(CCP)”이라 함은 HACCP를 적용하여 축산물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공정을 말한다.

4. “허용한계치”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한계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를 말한다.

5. “감시(모니터링)”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6. “개선조치”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감시결과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를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7. “검증”이라 함은 해당 작업장에서 HACCP의 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8. “HACCP 적용작업장”이라 함은 HACCP적용대상 도축장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HACCP 적용품목을 가공하는 축산물가공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작업장 등)** ①이 고시는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 적용되어 작업장별 적용대상 기준과 그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도축장

· 가. 적용대상기준 : 1일 평균도축실적(전년도 기준)(축산물종합처리장과 닭계열화도축장은 우선 적용)

## 나. 시행시기(표1)

※비고 : 도축업 영업자가 동일 작업장 안에서 소

〈표1〉

구 분	1일 평균 도축실적	시행시기	비고
소 도축장	100두이상 또는 정부지 원 축산물종합처리장	2000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제외
	50~100두미만	2001년 7월 1일부터	
	30~50두미만	2002년 7월 1일부터	
	30두미만	2003년 7월 1일부터	
돼지 도축장	1,000두이상 또는 정부지 원 축산물종합처리장	2000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제외
	500~1,000두미만 또는 수출도축장	2001년 7월 1일부터	
	300~500두미만	2002년 7월 1일부터	
	300두미만	2003년 7월 1일부터	
닭 도축장	100천수이상 또는 정부 지원 계열화업체	2000년 7월 1일부터	
	50천수~100천수미만	2001년 7월 1일부터	
	30천수~50천수미만	2002년 7월 1일부터	
	30천수미만	2003년 7월 1일부터	

도축업과 돼지도축업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시행시기의 적용은 2개의 영업중 영업 비중이 큰(영업의 주종을 이루는)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도축장의 적용품목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식육으로 한다.

2. 축산물가공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고시에 의한 HACCP 적용 작업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적용품목은 HACCP 실시상황 평가가 가능한 다음의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가. 식육가공장 : 햄류, 소시지류

나. 유가공장 : 우유·발효유·가공치즈·자연치즈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로부터 해당작업장의 HACCP 적용과 관련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작업장시설 등) ①HACCP 적용작업장의 시설은 법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의 해당 영업의 시설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②HACCP 적용작업장의 영업자는 해당작업장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장위생관리 등) ①HACCP

적용작업장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법시행 규칙 제6조 별표2의 “작업장의 위생관리 기준”과 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의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HACCP 적용작업장은 영업자가 HACCP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해당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하며, 이의 경우 영업자가 포함된다)를 지정하여 HACCP 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HACCP관리) ①HACCP 적용작업장의 영업자(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HACCP 관리기준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HACCP 관리기준서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다. 교대근무시 인수·인계방법

2. 제품설명서(축산물가공장에 한한다)

가. 축산물가공품명, 축산물가공품 유형 및 성상

나. 축산물 가공품 처리·가공보고연월일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성분배합비율

마. 처리·가공(포장)단위

바. 완제품의 규격

사.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아. 축산물가공품 용도 및 유통기간

자. 포장방법 및 재질

차. 기타 필요한 사항

3. 도살·처리 가공공정 등의 설비

가. 공정도(공정별 처리·가공방법)

나.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구획, 기계·기구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식육의 생산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을 말한다) 계통도

라.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4. 처리·가공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의 분석

5. 중요관리점

6. 중요관리점의 허용한계치

7. 감시(모니터링) 방법

8. 개선조치방법

9. 기록유지방법

10. 검증방법

② 제1항의 HACCP 관리기준서는 축산물별로 각각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분야별로 책임자의 점검일자와 서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HACCP 적용작업장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HACCP 적용작업장의 영업자는 작업장내의 축산물위생관리와 관련된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등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HACCP 적용작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시설관리, HACCP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HACCP팀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원료생산, 축산물의 처리·가공 및 유통에 관한 위생관리교육을 실시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HACCP계획에 대하여 별표1의 HACCP계획점검표에 의한 재평가를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요소의 분석 또는 HACCP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부장관은 HACCP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적용대상작업장의 영업자(HACCP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작업장의 영업자를 포함한다), HACCP팀 구성원 및

HACCP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은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련단체(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검사기관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은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 ① HACCP를 적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도축업의 경우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시기 이전에 HACCP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HACCP 적용작업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사본
2. 제품 또는 식육 생산현황
3. 원료생산, 처리·가공 및 검사 기계·기구목록
4. HACCP 실시상황자체평가표(별지 2호 또는 3호 서식)
5. 작업장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6. HACCP 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7.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점검일지
8.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관리책임자, HACCP 담당자)

② 영업자가 제1항의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축산물의 수출 등 HACCP 적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부장관은 HACCP 적용을 위한 자체실시기

간중 영업자의 교육·상담·지도 등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기관소속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상담·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HACCP적용작업장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작업장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관련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관련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물가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HACCP 적용작업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HACCP 적용작업장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①농림부장관은 HACCP적용작업장에서의 HACCP의 적절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HACCP 계획
2.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3. 개선조치
4. 중요관리점의 허용한계치
5. HACCP 실시기록
6.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7. 축산물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
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적절한 HACCP로 간주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HACCP계획에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출하한 때

5. 기타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4조(과태료처분기준의 적용) 작업장에 대한 HACCP 적용과 관련하여 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적용은 이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HACCP 적용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도축장에 한한다.

제15조(우대조치) ①농림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작업장으로 지정된 작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완화

2. 별표 2의 HACCP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품목지정사실에 대한 광고허용(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도축장이 HACCP시행시기 이전에 HACCP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자금(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기타 축산정책자금의 지원기준에 동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농림부장관은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HACCP적용작업장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1996-75호(‘96.12.5.)”의 규정의 의하여 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작업장과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HACCP를 적용하는 작업장과 품목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고시의 폐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고시 제1997-11(‘97.2.6)호의 “축산물작업장(도축·도계장)위생관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養豚**